

도시가스사업법 통합개정안 국회 통과

- 가스공급, 공급량 측정 적정조치 의무화 -

가스공급(취사전용) 의무화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보전방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문제와 관련해 온도압력보정계수 적용 등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통합개정안(대안)이 지난 해 12월 8일 열린 제262회 국회(정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취사전용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온도보정계수 도입 등의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허가 받은 공급권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제성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수요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는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방안 이행상황 지도감독권이 부여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기술지원실장은 “가스공급 의무화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보전방안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됨으로써 안정적인 가스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가스업체가 더욱 더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